

인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54160(본소), 2023나54177(반소) 판결

[건물인도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54160(본소), 2023나54177(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27624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희진, 송현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조철웅

변론종결 2024. 5. 7.

판결선고 2024. 6.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276248(본소), 2022가단 259165(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아래에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의 유익비를”을 “등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피고에게 유익비”를 “피고에게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민법 제203조 제2항” 앞에 “민법 제203조 제1항 전문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같은 액수의 유익비를”을 “같은 액수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진희원, 판사 이형우

별지

1)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22. 8. 22.자 반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장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애초부터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필요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한다.